

2021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 공고

「2021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2년도 인원배정 고시(병무청 고시 제 2021-10호, '21.5.31)」에 의거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견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I. 신청 개요	1
1. 신청·접수 대상	1
2. 선정규모 및 인원채용 제외대상	1
3. 추천 절차	1
II. 신규 병역지정업체 자격요건	1
1. 공통 신청자격	1
2. 업종별 자격요건	2
3. 신청 제외 대상	3
4. 신청 제출 서류	4
III. 신청 방법 및 선정평가 절차	6
1. 신청 및 접수기간	6
2. 신청 방법	6
3. 선정평가 절차	6
<붙임1> 업종별 접수기관 및 추천권자 현황	7
<붙임2> 업종별 표준산업분류표	8
<붙임3> 평가 기준 및 배점표	11

※ 관련 서식은 별첨 확인

1. 신청 개요

1. 신청·접수 대상

-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위해 신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견기업
- 그린뉴딜 관계기업 등 저탄소 산업 관련 관계기관 인증 업체 선정 우대('21. 8월 조기선정)
 - *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그린뉴딜 관계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21년 보충역 1명이상 채용업체)에 한정하여 현역 배정 가능

2. 선정규모 및 인원채용

- 신규 선정은 지원인력 규모 및 추천권자(산업통상자원부)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최종 결정함
 -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 7,000명
-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그린뉴딜 관계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업('21년 보충역 1명이상 채용업체)에 한정하여 기간산업체 배정인원의 5%이내 배정
- 병역지정업체로 기 선정된 업체는 인원수에 제한없이 바로 병무청에 보충역 편입 신청 가능

3. 추천 절차



*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실태조사 : '21.9~10월 예정

II. 신규 병역지정업체 자격요건

1. 공통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법인
 - *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며,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함

2. 업종별 자격요건

가. **제조업(공업)**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① 제조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② 공장이 등록된 업체
- ③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벽으로 구분되고, 별도 출입문 보유 등)
- ④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 병무청 현장실태조사(9~10월) 당일 반드시 상시근로자수가 충족해야 선정 가능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함.
 -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6월이 되는 월까지(창업 또는 합병으로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까지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까지 / 단, 신청월 전월이 창업일이 속한 월인 경우는 신청월 전월 말일 기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공장(사업장)의 평균 인원이 10명(5명) 이상. 다만,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당일 반드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5명) 이상 이어야 함.
-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

나. **정보처리업**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①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 사업자등록증 종목 란에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 자문, 개발 및 공급'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②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
- ③ 사업장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정보처리업 신청시 유의사항**

- ☞ 산업부 신청 대상 정보처리업종은 표준산업분류코드 <붙임2> 참조, 게임 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접수

다. **에너지업**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라. **광업**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광물(석탄 제외)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 **신청대상 세부 업종 확인**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신청·접수 받는 업종은 제조업, 정보처리분야(제한), 광업, 에너지업으로, 지정업체 신청을 희망하는 공장(사업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붙임2>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3. 신청 제외 대상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업체요청 (단,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다만, 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다만, 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1년('20.1.~'20.12.)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로 확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 업체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

4.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자격 및 증빙서류는 '21.6.30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업종별로 모든 서류 필수 제출

가. 신청요건 확인서류

- ※ 1~11번까지 공통서류, 12~16번 해당 업종의 제출 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개별 PDF로 제출
- ※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는 공고 별첨 파일을 참조

번호	제출 서류	제조업	정보처리	광업 에너지업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서식1> *해당 내용 모두 기재 후 날인 송부	1부	1부	1부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서식2> *<서식1>와 동일하게 작성	1부	1부	1부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서식3> *보충역만 신청한 기업은 작성 제외	1부	1부	1부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4> *21년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 및 일자리창출 기업만 해당	1부	1부	1부
5	중견기업확인서(유효기간 만료 전 확인서만 인정)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1부	1부	1부
6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말소부분 포함)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자료	1부	1부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부	1부
8	최근 3개년('18~'20) 재무제표 사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1부	1부
9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21년 5월 이후 발급한 자료만 인정(조회기간 : '20.1~'20.12)	1부	1부	1부
10	신청 법인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구속연월 : '18년 12월말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각 연도별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각1부	각1부	각1부
11	신청 공장정보처리업 경우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구속연월 : '21.1~'21.6까지 6개월분 모두 제출 (단, '21.6월 신고서 미발급된 경우 대체 서류로 제출) *대체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일 현재기준, 자격취득일 표시) *기업부설연구소 상시근로자수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연구인력 현황 제출	각1부	각1부	각1부
12	증빙서류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시 사본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 생략	1부	1부	1부
13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증 불가) *사·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	1부	-	-
14	정보처리분야 주력업종 확인서<서식5>	-	1부	-
15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	1부
16	광업원부 등본 원본	-	-	1부

* 중점정책육성분야 해당기업은 저탄소산업 인증서(녹색인증)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

나. 평가 관련 서류

※ <붙임3>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항목별 증빙서류 제출

번호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증빙 서류
1	일자리 창출(40)	인력 규모	2020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증가율	신청 법인의 3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우수 근로환경	각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2	기업 안정성(20)	업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매출액증가율	3개년('18-'20) 재무제표 기준(손익계산서)
3	재무 건전성(20)	영업이익률	3개년('18-'20) 재무제표 기준(손익계산서)
		부채비율	
4	기술혁신(10)	혁신형기업	각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R&D투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5	산학협력(10)	산학연계 협약기업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서 사본
합 계 100점			
※우대점수(추가)			
6	기업관련 우대 (최대 17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부가 제시한 소재 부품 장비 6대 분야 기업(각 2점) * 6대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기업관련 우대사항(각 3점) - 지방소재기업, 초기중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청년 디지털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기업 	

III. 신청 방법 및 선정평가 절차

1. 신청 및 접수기간 : '21.6.11(금) ~ 6.30(수), 17:00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담당자 이메일(kimjh@fomek.or.kr)로 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지 않음)
- 신청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2-3275-0102
- 제출서류 : 공고문 4~5Page 참조
 - * 신청서 미비, 증빙서류 누락 등의 경우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

3. 선정평가 절차

절 차	주 체	내 용	일 정
신청·접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1.6.11(금)~6.30(수)
↓			
서류평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자격 및 서류 확인 *평가지표 <붙임3> 참조	'21.7.1(목)~7.8(목)
↓			
추천점수 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기업에 점수 확인 및 이 의제기 접수	'21.7.19(월)~7.23(금)
↓			
점수 확정 및 추천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업종별 평가점수 순에 따라 평가등급(A~J)구분* 평가결과 병무청에 추천	'21년 7월 말
↓			
현장실태조사	병무청	추천내용 검토 및 사업장 현 장 점검 실시	'21년 10월 중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통보	병무청	최종 선정 및 업체 통보	'21년 12월 중

* 동일점수 발생시, 평가지표 번호가 빠른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대

분야별	업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업 (제조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정보처리, 시멘트·요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견기업)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화장품협회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물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에너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건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해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신청업체는 공장등록증명서에 기재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하여 해당분야로 신청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중 소분류(3자리수)는 세분류(4자리) 또는 세세분류(5자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세분류(4자리)는 세세분류(5자리)를 포괄하는 개념

*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35119(기타발전업)'인 경우, 351(전기업)에 포함되므로, 에너지 분야로 신청가능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제2017-13호, 10차)
공업	철강	241 1차 철강제조업 242 1차 비철금속제조업 243 금속 주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7111 방사선장치 제조업(단, 식약청 지정의료용구 제외) 272 측정, 시험, 향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광학기기 제외 273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7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부품 제조업(단, 30392(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제외)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2 철도장비 제조업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단, 31310 인공위성제조업 중 통신위성 제조업 제외) 319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	22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213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산업용 도자기 제조업만 해당)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410 유선통신장비제조업(단, "중앙통제식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시스템 제조" 만 해당)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장치 제조업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제2017-13호, 10차)
공업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85 가정용기기 제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부품 전기 장치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전자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단, 26295는 제외하고,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중 “컴퓨터용 전자접속카드 제조”는 제외)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단, 방송수신기 제외)
	화학	1511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1811 인쇄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단, “유.무연탄 및 기타 고급질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탄 또는 기타 응집 고체연료 생산”은 제외) 192 석유정제품 제조업 20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단, 20433은 제외)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66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공업	섬유	13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2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41 봉제의복 제조업 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3 편조의복 제조업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신발	152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제2017-13호, 10차)
	생활용품 등 기타	1512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케이스 제조업 1519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32 약기 제조업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단,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외) 33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광업	051 석탄 광업 061 철 광업 0629 기타 비철금속 광업 0711 석회석 및 점토 광업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건설용 쇄석 생산업은 제외) 07123 모래 및 자갈 채취업 0721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0729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08090 광업지원 서비스업(원유 및 천연 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광물 중 우라늄, 토륨, 건설용 석재, 건설용 쇄석, 소금을 제외하고 광물탐사활동도 제외)
	에너지	351 전기업 352 가스제조 및 배관 공급업
정보통신 분야	통신 기기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22 컴퓨터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영상기기제조업 (※방송수신기만 가능,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은 제외) 31310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통신위성 제조업만 가능)
	정보 처리 관련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붙임3

평가 기준 및 배점표

번호	항목	배점	평가기준	세부 배점 및 평가방법
1	일자리 창출	40	○인력 규모(15점)	○ 50명 미만(12점) ○ 50~300명 미만(13점) ○ 300명 이상(15점)
			○고용 증가율(15점)	○ 0%~1% 미만(12점), ○ 1%~3% 미만(13점) ○ 3% 이상(15점)
			○우수 일자리 환경(10점)	○일자리 우수기업 최대 10점(건당 2점) - (성과공유) 내일채움공제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스톡옵션 부여 - (근로환경) 일자리오피스기업, 근로시간단축, 가족친화인증, 청년친화 강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HRD우수기관 인증기업,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클린사업장
2	기업 안정성	20	○업력(10점)	○ 0~5년 미만(7점) ○ 5년~10년 미만(9점) ○ 10년 이상(10점)
			○매출액 증가율(10점)	○ 0%~1% 미만(5점) ○ 1%~3% 미만(7점) ○ 3%~5% 미만(8점) ○ 5% 이상(10점)
3	재무 건전성	20	○영업이익률 (10점)	○ 0%~1% 미만(7점) ○ 1%~3% 미만(9점) ○ 3% 이상(10점)
			○부채비율(10)	○ 200%~500%이상(7점) ○ 100%~ 200%미만(9점) ○ 100% 미만(10점)
4	기술 혁신	10	○혁신형 기업(5점)	○ 정부 인증 기업(최대 5점, 건당 1점) - WC300, WC+기업, 중견기업상생혁신(R&D) 선정기업, 우수기술 연구센터(ATC) 지정 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KDB 글로벌 챌린지200, 뿌리기술전문기업, 신기술 (NET)·신제품(NEP)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특허실용신안 등 보유 업체
			○R&D 투자기업 (5점)	○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5점), 전담 부서만 있는 경우(3점)
5	산학 협력	10	○산학협약기업	○ 산학협력 기업(최대 10점, 건당 5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유니테크 연계 산학협약 체결 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합 계			100	

※우대점수(추가)

6	기업관련 우대 (최대 17점)	○산업부가 제시한 소재 부품 장비 6대 분야 기업(각 2점) * 6대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기업관련 우대사항(각 3점) - 지방소재기업, 초기중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청년 디지털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기업
---	------------------	--

* 동일 점수 경합 시, 추천점수 항목순서(1, 2, 3 ...)로 배점이 높은 기업을 우선 추천